

보건복지 ISSUE & FOCUS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321호 (2016-21)
발행일 2016. 08. 22.
ISSN 2092-7117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EL 044)287-8000 FAX 044)287-8052

장애인의 차별 경험 실태와 정책적 함의



최복천
복지행정연구실 연구위원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변화됐다고 하지만 장애인이 직접 체감하는 차별 정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초·중등학교 입학 및 전학 시 차별,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 보험 계약 시 차별처럼 특정 영역에서의 차별 경험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어 차별에 취약한 집단임을 보여 줌.
- 따라서 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집중적인 개입이 요구되며, 차별 취약 대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1. 논의 배경

■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채택된 이후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서명한 당사자국으로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또한 2015년에는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 오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가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보도되는 등 장애인 차별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줌.

■ 이에 지난 10년간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변화 추이와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함.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제반 사회영역의 차별 경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함.

2. 장애 차별 인식 및 경험 변화 양상

■ 장애 차별 인식 변화

- 2014년 현재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37.8%로 나타남.
 - 이는 2011년도 39.9%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준이나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체감하는 차별 정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본인이 경험한 장애 차별뿐 아니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 역시 높은 수준 (72.6%)으로 드러남.
- 한편 2007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장애인의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11년도의 7.8%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이나 여전히 대부분의 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을 드러냄.

■ 장애 차별 경험 변화

- 장애인이 체감하는 차별을 생활영역별로 나눠 살펴보면 일부 영역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
 - 2005년 29.6%이던 결혼 시 차별 경험은 2014년 16.4%로 13.2% 포인트 감소했고, 취업 시 차별 경험은 2005년 39.1%에서 2014년 35.8%로 3.3%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큰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특정 영역에서는 차별 경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이나 전학 시 느끼는 차별은 2005년 이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서 또래 학생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 또한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음.
 - 또한 보험제도 계약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2014년 45.4%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의 차별 경험 영역 중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

〈표 1〉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2005년, 2011년, 2014년)¹⁾

(단위: %)

구분		2005	2011	2014
입학·전학	유치원(보육시설)	23.0	30.5	27.1
	초등학교	33.8	34.2	38.8
	중학교	27.0	29.8	31.6
	고등학교	21.5	29.3	25.1
	대학교	11.2	16.3	12.5
학교생활	교사로부터	17.5	21.4	18.7
	또래 학생으로부터	46.2	49.2	47.1
	학부모로부터	12.3	15.1	13.7
직장생활	취업	39.1	34.0	35.8
	소득(임금)	23.7	20.7	23.9
	동료 관계	18.9	16.9	20.0
	승진	16.5	14.2	13.3

1)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등록장애인'으로 2005년, 2011년, 2014년과 모집단의 정의가 달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워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구분		2005	2011	2014
지역사회생활	운전면허 취득	14.3	14.3	10.2
	보험제도 계약	39.8	53.7	45.4
	의료기관 이용	4.2	3.7	4.6
	정보통신 이용	1.1	2.0	1.9
	지역사회시설 이용	5.4	7.8	7.3
결혼		29.6	26.5	16.4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2011년,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3. 장애 유형별 차별 경험 현황²⁾

■ 학교생활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입학 및 전학 시 차별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입학·전학 시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신체적 장애보다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발달장애인은 모든 교육과정 동안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에서의 차별 경험 이 51.7%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에서의 차별 경험 역시 46.6%나 차지함.
-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경험을 행위 주체별로 살펴보면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또래 학생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교사, 학부모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 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의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 경험이 63.6%나 차지해 왕따나 학교폭력의 위험을 드러냄.

〈표 2〉 학교 관련 차별 경험(2014년)

(단위: %)

구분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전체
		외부 신체 기능 장애	내부 기관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입학 · 전학	유치원(보육시설)	17.8	14.3	37.2	20.2	27.1
	초등학교	32.9	27.6	51.7	38.3	38.8
	중학교	24.8	16.2	46.6	42.1	31.6
	고등학교	18.0	10.3	41.0	40.5	25.1
학교 생활	교사	12.7	15.3	31.1	30.5	18.7
	또래 학생	39.7	33.7	63.6	58.2	47.1
	학부모	9.4	10.3	24.9	10.2	13.7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 직장 및 지역사회생활

- 장애인이 취업 시 경험하는 차별은 소득(임금)이나 직장 내 동료 관계로부터의 차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 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인이 신체적 장애인에 비해 보다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
 - 특히 정신장애인은 취업이나 동료 관계에서 60% 이상의 수준으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 줌.

2) 본 원고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15개 장애 유형의 대분류 체계인 '신체적 장애'(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정신적 장애'(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세부 분류로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 기관 장애(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로 구분하였음.

- 이 외에도 장애인은 보험제도 계약, 의료기관 이용, 지역사회 시설(음식점, 극장, 수영장 등) 이용에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보험제도 계약에서의 차별 경험은 모든 장애인에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부 신체 기능 장애인에 비해 내부 기관 장애인이나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높아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표 3〉 직장 및 지역사회생활 차별 경험(2014년)

(단위: %)

구분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전체
		외부 신체 기능 장애	내부 기관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직장생활	취업	33.6	41.0	48.4	69.8	35.8
	소득(임금)	22.1	23.9	41.4	56.8	23.9
	동료 관계	18.0	14.2	37.0	64.7	20.0
지역사회생활	보험제도 계약	42.0	61.5	68.8	59.4	45.4
	의료기관 이용	4.0	3.6	9.4	9.0	4.6
	지역사회시설 이용	6.1	4.0	19.1	13.2	7.3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4. 정책적 함의

■ 장애인 중 차별 취약 대상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인권 교육 강화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변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함.
- 특히 장애 일반 또는 신체장애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의 한계를 직시하고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차별에 더욱 취약한 대상이므로 이들에게 적합한 차별 예방 및 권리 옹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적극적 조치 마련

- 장애인은 학교 교육 기간 동안 차별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교육권 침해 및 학교생활 내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상설 모니터링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보험은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계약 시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보험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함.

집필자 최복천 (복지행정연구실 연구위원)
문의 044-287-816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 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

KI 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